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3. 우선, 전국을 대상으로 기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합니다. (9월 7일 0시 ~ 20일 자정)  
다만,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,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 <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>

- ①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
  - ② 공공기관 수준(전체인원의 1/2 유연근무)에 준하여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 등) 및 휴가제도 적극 활용
  - ③ 클럽, 노래연습장,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
  - ④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  - ⑤ 학교 밀집도 완화(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, 유·초·중학교 1/3, 고등학교 2/3 수준)
4. 수도권 지역의 경우,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연장 (9.7~9.13)하되 일부 조치를 확대합니다.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의 범위를 제과제빵점·아이스크림/빙수점(프랜차이즈형)으로 확대하고 학원과 유사한 직업훈련 기관(수도권 671개소)을 집합금지대상에 추가합니다.

### <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내용(확대방안 반영) >

- ①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에 대해 21시~익일 0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허용
-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점에 대해 영업 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- ③ 학원(10인 이상, 300인 미만) 및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
\*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,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- ④ 헬스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

5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공문 및 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정리표. 끝.

##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**고두욱** 과장 전결 2020.9.4.  
**니성화**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1041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, 산업통상자원부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1 팩스번호 044-203 / [kodook@motie.go.kr](mailto:kodook@motie.go.kr) / 대국민 공개